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33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경제성 미달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경제성미달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

-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30(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다만, 내관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공급배관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

③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군수·구청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현 주 소	(전화 :)		
도시 가스 공급 회사 확인	④ 세 대 수 (가 구 수)	신청세대	세대 / 총세대	세대
	⑤ 공급구역	신청자 명단 : 별첨		
		공사시점 : 인천광역시	구·군	읍·면·동
	공사종점 : 인천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⑥ 배관연장	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			
⑦ 공급가능 여 부	공급가능여부 : 가능, 불가 공급가능 예정 시기 :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시가스 공급회사 (인) ○○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 지구명					
사업량	가구수 (세대수)	가구(계량기 설치 : 대)				
	공급배관	m(a m)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사업자 투자비	주민부담 시설분담금				보조 금액
		소계	일반시설 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공급회사 (인) ○○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별 지원 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연락처			
	주 소					
공 사 명						
배관재질 및 연 장		총공사연장		시공감리일		
공급배관 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단독주택용 : 세대		
				업무·영업용 : 세대		
보조금 신청 내역						
총사업비	사업자 투자비	주민부담 시설분담금				보조 금액
		소계	일반시설 분 담 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도시가스사업법 ○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제20조(공급규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

-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주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민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
- 나. 관련조문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도시가스 공급배관 투자비 : 530,000원/m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미 공급지역 63개소의 예상 공사비 산출내역)
-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총 공사비의 15~20% 내외임.
 - 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산정근거 :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규정 [별표2]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산출식)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i) 40m³/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 적용
 - ii)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주)}) - (시설
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 소비량

※ 주) 적용율 : 32%

3) 연도별 비용추계

- 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정·제출한 미 공급지역 예상공사비를 참고하
여 총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연차별(5년) 균등 배분
- 나)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한도를 80%로 제한

나. 추계 결과

- | | |
|------------------------------|--------------|
| 1) 총 투자 예상액(미공급지역) | : 267,400백만원 |
| 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발생금액 | : 44,300백만원 |
| 3) 시 예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의 80% 지원) | : 35,440백만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민간보조)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도시가스지역 공급배관설 치비등보조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35,440,000
	소계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35,44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35,440,000
	일반회계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7,088,000	35,44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4. 작성자

경제수도추진본부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 윤 수